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추가에 관한 일부(추가) 법률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7 년 7 월 31 일

청 원 인

성 명 : 송민찬

주 소 :

전화번호 : _____

소 개 의 원 : 송 민 찬 (인) 외 17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송민찬
건명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추가에 관한 일부(추가) 법률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7년 7월 31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송민찬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17년 7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p> <p>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성인에 의한 강간, 특수강간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만연한 가운데 정작 강간, 특수강간에 대한 공소시효로 인해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료되면 분명히 강간을 한 죄가 있음에도 공소권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p> <p>또한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흔히 살인, 강간, 방간과 성폭력 흉악 범죄로 구분되는 4대 범죄 중 범죄 발생범죄부터 범죄자 검거 일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미제사건은 총 788건인데, 이중 534건이 강간죄로 구분됩니다. 더욱이 이런 장기미제사건의 강간죄인 경우 재범률이 56.7%에 달해 명백하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p> <p>대법원 2015도1362의 판례를 보면, 범인은 장애인 강간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본래는 공소시효 적용에 따라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2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을 강간한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만 적용하는 법률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모든 강간, 특수강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면 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강간, 특수강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p> <p>정치법제위원회 입법청원안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추가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253조의 3에 관한 일부(추가) 법률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p>	

소개의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2017년 현재 성인에 의한 강간이나 특수강간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나, 공소시효로 인해서 범죄자를 찾아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정된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특히 강간, 특수범죄 등 중범죄가 사실로 드러나도 공소시효가 완성될 경우 공소권이 없어 국가 안보와 사회 정의 실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안전한 국가 사회 건설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본 청원인은 일부 범죄에 대하여 공소 시효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1998년에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에서는 15년 만에 피해 여대생 속옷에서 검출된 DNA를 이용해 범인을 체포했으나, 일반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5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공소시효 15년의 특수강도 강간죄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수강도 부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강간 범죄의 사실은 모두 무시 된 채 범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흔히 성범죄, 살인, 강도와 방화가 흉악 범죄로 구분되며, 이런 4대 범죄의 범죄 발생일로부터 검거기간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은 총 788건에 달했으며, 그중 강간이 534건을 차지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의 재범률이 57.9%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공소시효의 한계로 인해 사회 안보가 위협받고 있으며, 피해자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총 장기미제사건 중 강간, 특수강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강간, 특수 강간에 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공소 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2. 주요골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법률 제 253조의 3을 다음과 같이 부칙으로 신설한다.

제 253조의 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 249조부터 제 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53조의 3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강간, 특수강간한 범죄 (중범은 제외한다)로 무기징역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 249조부터 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문
<p>제 253조의 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p> <p>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 249조부터 제 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신설)</p>	<p>제 253조의 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p> <p>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 249조부터 제 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 253조의 3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p> <p>사람을 강간, 특수강간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무기징역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 249조부터 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3. 기대효과

제 15회 정기회의 정치법제위원회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범위가 강간, 특수강간죄까지 확대된다면, 피해자와 피의자가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위험 불안 또한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더불어 피의자가 정확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설움을 달랠 수 있고, 검거를 통해 피의자 자신 또한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인 성명 : 송 민 찬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